

1. 개정이유

-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도입('98년) 후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인증단체들이 법령의 표시 디자인을 변형함으로써 인증표시의 통일성 결여됨에 따라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체표준 인지도 제고 필요

2. 주요내용

- 단체표준 인증표시 개선,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신설 및 인증제품 생산공장의 표시판 도입(안 제20조 및 별표1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제6호 중 “단체표준”을 “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별표 13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.

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13]

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

(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조 제3항 관련)

I. 단체표준 인증표시

1. 표시

가. 기본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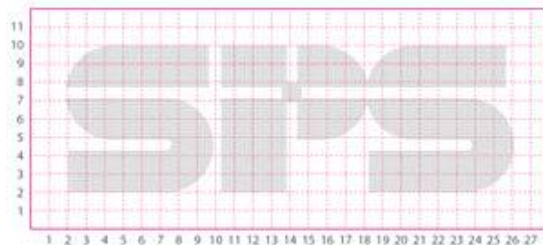
<단체표준 인증표시>



<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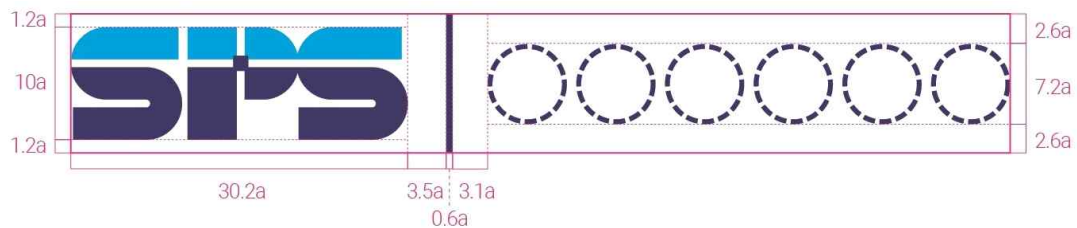


<작도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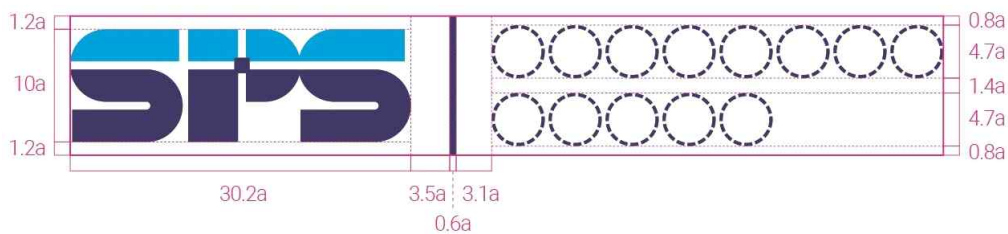


나. 인증단체명 표기 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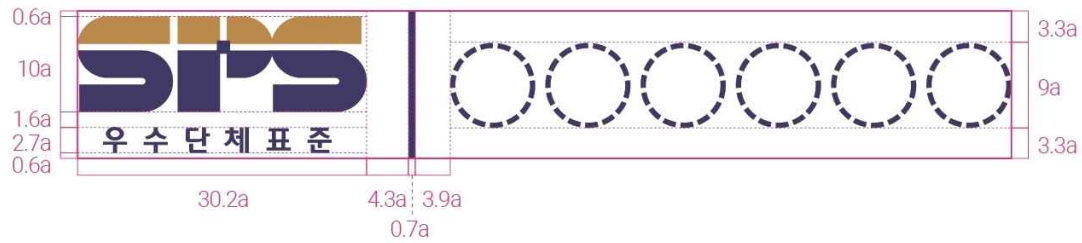
<단체표준 인증표시 - 인증단체명 8자 이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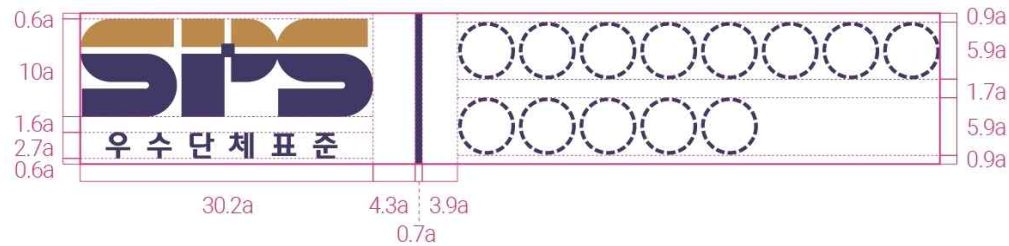
<단체표준 인증표시 - 인증단체명 9자 이상>



<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- 인증단체명 8자 이내>



<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- 인증단체명 9자 이상>



2. 표시대상

- 가. 단체표준 인증표시 : 제20조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·제공하는 단체표준인증제품·서비스
- 나.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: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생산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

3. 표시방법

가. 기본형

- 1) 색상 : 제1호 가목과 같이 “SPS” 표시 상부 1/3은 시안(cyan)색 , 하부 2/3는 남색을 적용한다.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의 경우 상부 1/3은 금색을 적용한다. 이 때, 시안색은 CMYK C100(PANTONE 299 C), 남색은 CMYK C100 M90 Y25(PANTONE 2747 C), 금색은 CMYK C5 M35 Y75 K25 (PANTONE 873 C)로 한다.
- 2) 크기 : 표시 대상 제품·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가목의 작도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은 유지한다.

나. 인증단체명

- 1) 색상 :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을 적용한다.
- 2) 서체 : 국문서체는 LH Bold,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를 적용한다.
- 3) 기타 : 인증단체명이 9 글자 이상일 경우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.

3. 표시방법

가. 기본형

- 1)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 mm, 세로 290 mm 로 한다.
- 2) ‘단체표준 인증 공장(사업장)’ 및 우수단체표준 인증 공장’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,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 로 적용한다(1pt = 0.35mm).
- 3) 인증단체명,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(표준)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을 적용하고, 국문 서체는 LH Bold, 영문 서체는 양평균체 Bold를 적용한다.
- 4)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(표준)명 글자의 크기는 45pt를 적용한다.
- 5) 모든 표기 요소는 앞 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.
- 6)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,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 · 사업장의 경우 남색, 우수단체표준 인증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.

나.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: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.

- 1)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 mm로 하며, 세로는 최소 60 mm으로 하며,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.
- 2)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는 별표 13의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증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관련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단체표준 인증업무) ① (생략)	제20조(단체표준 인증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별표 13의 <u>단체표준</u> 인증표시 도표	6. ----- <u>단체표준</u> 및 우수 <u>단체표준</u> ----- -----
<신설>	③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별표 13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